



#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논의에 관한 소고

김경환 수석연구원

## 요약

■ 최근 국회와 정부는 신용정보 관리체계에 공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그 주요 내용은 현재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대체하는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일원화하는 것임. 그러나 별도의 기관 설립 방안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시점에서는 취급정보의 최소화나 신용정보회사의 정보제공 제한 등을 통해 공적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검찰발표, '14. 1. 8) 이후 국회와 정부는 신용정보 집중 및 공유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신용정보관리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문제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밝힘.

- 이는 민간성격을 갖는 금융권 각 협회가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관리·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모인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 등을 거쳐 대부업체나 카드사 등으로 무분별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임.
-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등은 신용정보관리 공공기관의 설립이 개인정보 유출방지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
  - 공공기관을 설립한다고 해서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해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해외에서도 공공기관이 신용정보를 독점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부각
- 이하에서는 신용정보 관리체계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해외사례 및 취지 그리고 현행 제도의 검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신용정보 관리체계의 핵심인 신용정보 집중(제공)기관은 그 기관의 법적 기반 및 역할 등에 따라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Public Credit Registry: PCR)과 민간 신용정보집중기관(Private Credit Reporting Firm)으로 구분됨.<sup>1)</sup>
  - PCR은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설립된 제도적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운영됨.
  - CB(Credit Bureau)라 불리는 민간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개 일반 기업의 형태 또는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간기구(협회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의 신용정보 공유체계를 살펴보면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CB와 PCR이 함께 존재함.
  - 선진국 중 미국과 영국의 정보공유는 전적으로 CB에 의존하는 반면, 프랑스의 신용정보공유시스템은 PCR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표 1〉 세계 주요국의 신용정보 관리체계

국가	집중기관	공유정보	비 고
미 국	CB	불량정보 · 우량정보	90년대 후반부터 우량정보 공유 기피현상 발생
호 주	CB	불량정보	우량정보 집중 금지
일 본	CB(준PCR)	불량정보 · 우량정보	업권별 신용정보 공유체제(연체정보는 통합관리)
독 일	PCR · CB	불량정보 · 우량정보	PCR과 CB 간의 정보 미공유
이탈리아	PCR · CB	불량정보 · 우량정보	PCR과 CB 간의 정보 미공유
프 랑 스	PCR	불량정보	민간 신용정보회사 설립 금지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3. 10), 『보험정보 집중 · 활용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pp. 87~9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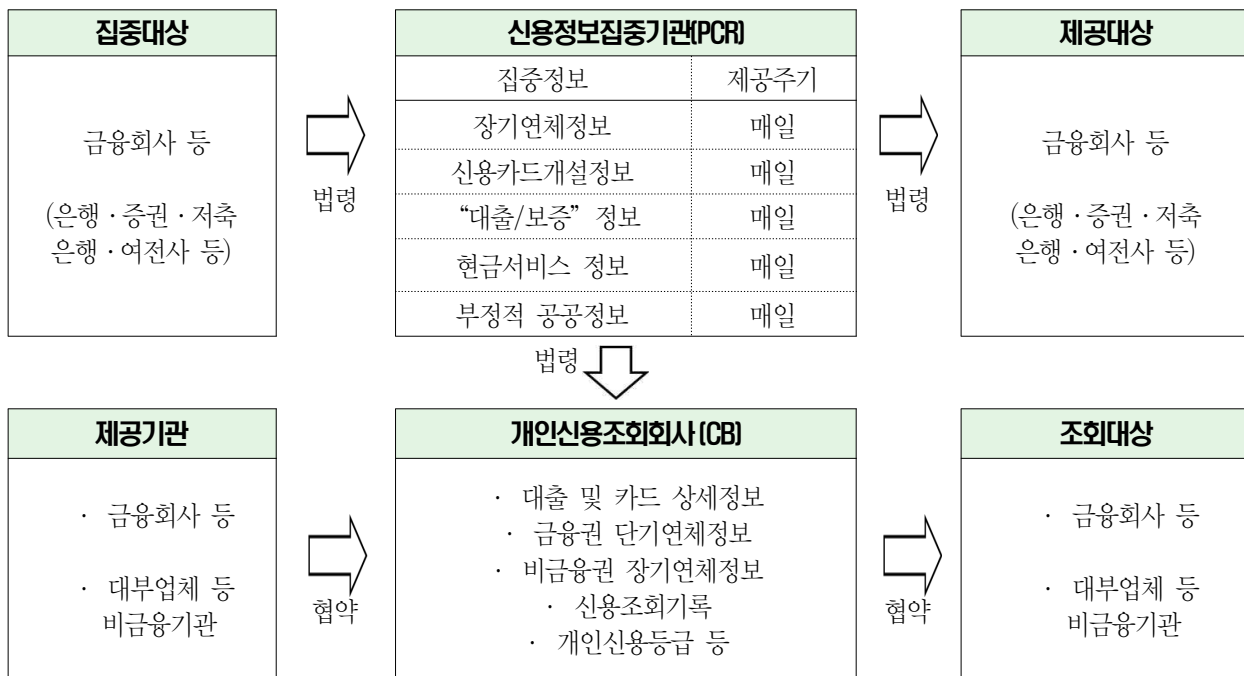
- 주요 선진국들의 경험을 살펴볼 때 PCR의 설립은 아래의 목적하에 주로 CB산업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sup>2)</sup>
  -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통해 금융제도 전반의 안전성을 제고

1) 박찬일 · 남수중(2009. 10. 30), 「금융부문의 발전과 법 · 제도의 역할: 주요 선진국들의 신용정보공유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pp. 106~108.  
 2) 박찬일 · 남수중(2008. 4), 「중국 신용정보공유제도의 발전: 법금융학적 관점」, 『동북아경제연구』 제20권 제1호, pp. 277~278; 이인호 · 강경훈(2010. 3), 「PCR과 민간 CB의 상생적 발전 방안」, 『조사연구 Review』 제29호, pp. 12~28. 참조.

- 독일의 PCR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의 PCR은 실제로 대규모 차입자의 파산에 따른 은행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도적 대응책으로 설립
- World Bank의 2004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PCR을 설립한 국가의 절반 이상이 금융감독이 PCR 설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응답
- 미발달된 CB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당국의 필요
  - PCR은 채권자(신용제공기관)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CB산업의 한계점으로 인한 시장실패 가능성을 극복
  - CB의 정보자본 축적은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특성을 지님에 따라 독과점시장을 형성
  - 긍정적 정보에 대한 자발적 공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음.
- 우리나라의 개인신용정보는 제도적으로 기초정보를 집중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자율적 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민간 CB인 신용정보회사를 중심으로 공유·활용되고 있어, PCR과 CB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공적인 성격을 띠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를 집중하며,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통 활성화는 민간 CB가 담당하는 구조임.
- 정보의 공적 집중을 통한 신용정보의 관리와 공유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와 5개의 업종별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들이 담당하고 있음.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록정보를 수집하여 정보제공기관, 공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함.
  -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동종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동종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임.
    - 현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저축은행연합회 및 정보통신산업협회 등이 있음.
- 계약에 기초한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과 신용정보의 가공·평가 및 조회서비스 제공은 신용조회업을 허가받은 민간 신용정보업자(CB)가 담당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서울신용평가정보(SCI),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및 한국기업데이터(KED) 등의 민간 회사가 영업 중에 있음.

〈그림 1〉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관



자료: 금융감독원(2013. 3, 5),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참조.

■ 올해 초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국회와 정부가 신용정보 관리기관의 공적기관화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의 3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음.

- 신용정보집중기관들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회사인 CB에 무작위로 제공함에 따른 공적 기능의 약화와 제도적 미비점 보완 필요
- 신용정보집중기관들이 관련 산업의 회원들로 구성된 협회로서 해당 업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대변자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는 인식
-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모두 6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감독이 곤란

■ 신용정보 관리체계의 공적 기능 부여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개선안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자격, 역할 등을 재정립해서 정보보호·보안체계에 대한 관리와 책임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임.

- 금년 2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는 현행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설립하고, 각 협회에서 수집하고 있는 정보를 공공기관으로 모두 이관하도록 해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sup>3)</sup>
  - 한편 4월 23일 정무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는 현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sup>4)</sup>
- 신용정보 관리체계에서의 공적 기능 부여를 위해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실효성의 측면에서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들은 신용정보법에 근거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관리 공공기관을 설립한다고 해서 해킹 등 정보유출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임.
    - 은행연합회는 외형상 민간기구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법규에 의해 그 권한과 기능이 세밀히 규제되고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음.<sup>5)</sup>
    -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차선책으로 외국의 예처럼 중앙은행이나 감독기관 등에 PCR기능을 부여할 경우에도, 신용정보의 관리 및 운영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현행 방식보다 정보유출이나 오·남용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중앙은행이나 감독기관 내부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
- 따라서 현행 신용정보 관리체계의 골격을 유지하거나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해 나가되, 현시점에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취급정보 최소화나 CB로의 정보제공 금지 등을 통해 신용정보 관리에 공적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취급정보 최소화)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들도 은행연합회가 집중하는 기초정보만을 취급하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PCR이 공적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취급정보 최소화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인식 및 신뢰성 제고
  - (CB로의 정보제공 제한) CB는 민간회사로서 신용정보 활용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PCR의 보유 정보를 CB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거나 건별 조회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PCR의 공적 취지를 유지하고 정보 남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불안감을 최소화. **kiqi**

3) 국회사무처(2014. 2. 21), 『정무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제322회 국회(임시회) 정무소위 제1차 회의, p. 5.

4) 파이낸셜뉴스(2014. 4. 23자 인터넷판), 「정무위 소위, 신용정보보호법 의견 ‘접근」.

5) 한국개발연구원(2013), p. 84.